

만을 알고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의 항원 항체를 사람의 피에서 검출해냄으로써 어느 형의 간염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더 나가서는 B형의 경우 현재 전염성이 있는지, 만성으로 되었는지, 면역이 되어 완전히 치유되고 다시는 같은 형의 간염에 안 걸리게 되는지를 알게되는 검사인 것이다.

결론

1. 바이러스성 간염은 A, B, 非A非B형의 세가지가 있다.
2. A형은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전염되지만 쉽게 낫고 거의 만성화하지 않는다.
3. B형은 환자나 보균자에게서 바이러스가 오염된 모든 물체를 통해서 전염된다. 따라서 환자와의 접촉은 삼가고 전파경로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는 병

원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오염이 되었을지 모르는 이발소 면도기, 대중이 함께쓰는 물컵, 침 맞기 등 피부부를 뚫고 들어가는 물체는 될수록 사용 안하는게 좋다.

4. 非A非B형은 수혈에 의해서만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소화불량, 식욕상실, 전신피로감, 구역질, 황달 등의 증세는 간염에서 많이 보는 증세임으로 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간염은 증세, 혈청 간기능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7. 간염환자와 자주 접촉하거나 환자의 물건, 배설물, 검사물(혈액, 소변, 대변 등)을 다루는 사람은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자=仁濟醫大부속 서울白병원
내과교수·의박〉

職場人(集團)의 身体檢査는 왜 必要한가?



— 勤勞者(職場人)의 産業保健管理의 重要性 —

柳 東 俊

産業場 保健管理의 目的
산업보건관리의 목표는 근로자

특집 · 健康管理 이렇게 하자

직장인)의 모든 불건강상태와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력 및 생산능률을 증가시켜 산업과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산업보건관리의 주요 사업내용은 건강관리, 환경관리, 보건교육 및 제반통계이다.

〈世界保健機構와

國際勞動機構의 규정〉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합동위원회에서는 산업보건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2) 산업장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 有害要因에 기인된 손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3) 합리적인 노동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4) 정신적, 육체적 적성에 맞는 직종에 종사케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능률을 최대한으로 거양하는 것 등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노동력을 보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健康管理 奉仕의 內容

직장인 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보건관리·봉사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건강진단: 체용시 신체검사, 정기신체검사, 특수건강진단 등으로 구분한다.

(2) 결핵관리: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성인에 있어서는 X-선 간접촬영, X-선 직접촬영, 객담검사의 순서로 집단검진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결핵 및 호흡기질환 등을 관리한다.

(3) 비전염성질환관리: 40세 이상에서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등을 조기발견 또는 진단하기 위해 혈압, 심전도, 당뇨혈당, 단백, 혈액, 신기능등의 제반검사를 실시한다.

(4) 직업병의 관리: 직업에 따라 잘 발생하는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배치를 전환시키거나, 또 적성검사등도 실시한다.

(5) 건강상담: 각 산업장의 의무실(보건실)등에 保健관리자는 물론 제반 상담·지도자를 두어 신체,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심리적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신체검사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는 보건관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건강관리로서의 신체검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서 채용신체검사, 정기신체검사, 임시 또는 수시 신체검사의 세가지로 구분하며, 색출대상 질병에 따라서 일반 및 특수검사로 구분한다. 또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절차에 따라 異常者색출검사(제1차 건강진단)와 정밀검사(제2차 건강진단)로 구분한다.

I. 채용시 신체검사

그 직업에 종사함에 알맞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고 그 특징에 따라 직장내의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건강장애를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밖에도 채용시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유해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얻는데 있다. 법에 의거 13세 미만의 소아는 취업이 금지되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女子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나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간질, 정신병환자들은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II. 정기신체검사

채용시 신체검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같은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원칙은 신체상 손상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 치료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정기신체검사의 횟수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유해작업장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또는 이보다 더욱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던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취사장에서의 근무자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의 만연을 방지·예방하여야 한다.

III. 특수건강진단

모든 산업장에서는 반드시 그 업종에 특유한 작업환경과 직업조건이 있기 마련이며,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유해인자의 작용으로 특정한 직업병에 걸리게 된다. 특수건강진단에서 제1차 건강진단(screening test)은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집단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건강관리상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그 집단으로부터 직업병의 의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2차 건강진단(정밀검사)은 제1차 건강진단으로 발견된 건강이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職業病(Occupational Diseases)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직장인의 集團檢診

집단검진(Mass screening)이란 어떤 직장 또는 人口집단에 신속하고도 간편한 어떤 진단 검사법을 집단적으로 적용하여, 어떤 질환에 이환되어 있어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질병이나 장애, 결함등을 조기에 추정, 발견해 내리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색출검사라고도 말한다.

집단검진은 진단을 내리려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고 집단검진으로 陽性 또는 의심되는 所見을 나타낸 사람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필요한 치료를 위해 醫師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물론 어떤 경우는 집단검진용 검사법으로 診斷이 가능할때도 있다.

비전염성질환, 즉 慢性病, 소위 成人病 같은 질환은 발생전 예방인 一次的 予防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早期 診斷과 早期 治療라는 二次的 予防이 管理方法으로 가장 效果의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을 위해서 集團에 실제로 적용하는 집단검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定期的 主要檢査의 內容

집단검사등에서 비전염성질환 같은 것을 색출해 내기 위해선 定期的인 檢診을 하는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검사가 될하다. (1) 폐결핵,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및 폐암등의 진단을 위한 胸部 X-선 檢査, (2) 年老者에서 생리적으로 점차 야기되는 視·聽力 감퇴여부확인을 위한 시청각 검사 및 眼圧 측정, (3) 당뇨병 및 신장염진단을 위한 尿 檢査, (4) 胃腸系의 궤양이나 암등의 진단을

위한 上部消化器透視 촬영, (upper G-I series), (5) 便中 潛血 검사 (6) 直腸內 종양진단을 위한 직장경 검사, (7) 당뇨병, 빈혈 및 매독등의 진단을 위한 혈청·혈액 검사, (8) 고혈압, 심장병등의 진단을 위한 혈청내 Cholesterol 値 측정, (9) 자궁경부암진단을 위한 膺分泌物の 세포진 검사, (10) 관상동맥질환 및 각종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한 心電圖 (E. C. G.) 검사등이다.

의사는 이상의 종합조건을 고찰하여 異常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적절한 지도와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도록 조치·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진행이나 합병증, 후유증의 발생을 방지, 억제하여 불구·무능력상태 또는 생명의 위협에서 치료효과를 얻거나 再活치료에 크나큰 成果를 얻을 것이다.

〈필자=경희의대 교수·의박〉

